

[별표1]

생활개척 위반사항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생 활 개 척 위 반 행 위 유 형	보 상 금 액
1. 쓰레기, 오·폐수 배출 등 환경위해 행위자	20,000원이하
2. 심야, 퇴폐·변태영업 행위자	20,000원이하
3. 건강위해식품 유통 행위자	20,000원이하
4. 불법출판물 취급 행위자	20,000원이하
5. 불법 음란비디오물 판매, 대여행위자	20,000원이하
6. 불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자	20,000원이하
7. 오물(담배꽂초, 휴지 등)투기, 음주소란, 방뇨 등 기초생활질서 위반자	20,000원이하
8.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	20,000원이하
9.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위험요소	20,000원이하
10. 학교앞 유해환경 행위자	20,000원이하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4. 12. 13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4. 12. 13
- 라. 상정일자 : 1994. 12. 22(제9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이효선)

가. 제안이유

○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설치기간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 지방 12200-3393(94. 12. 9)호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이 2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 개정

나. 주요골자

○ 사업소 설치기간 연장

-현행 : 93. 1. 1 ~ 94. 12. 31까지

-연장 : 95. 1. 1 ~ 96. 12. 31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4
의결 년 월 일	94. 12. 29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2.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설치기간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 지방 12200-3393(94. 12. 9)호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이 2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개정

2. 주요골자

- 사업소 설치기간 연장
 - 현 행 : 93. 1. 1 ~ 94. 12. 31까지
 - 연 장 : 95. 1. 1 ~ 96. 12. 31까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수정 (안)
(신 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1994. 12. 13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4. 12. 13
- 라. 상정일자 : 1994. 12. 22(제9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이효선)

가. 제안이유

- 시민회관의 운영실태를 도에서 일제 점검한 결과 관리계와 기술계를 통합 운영토록 지방 12200-3198(94. 11. 19)호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 구

- 관리계 + 기술계 → 관리계
- 기술계 → 공업과 품질관리계 신설(기술계 폐지 상계조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